

##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정 2019. 2. 1. 규칙 제1522호  
일부개정 2019. 10. 28. 규칙 제154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15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 10. 규칙 제1608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162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정책 분야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1. 시정혁신 분과위원회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로 한다.
2. 행복도시 분과위원회는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안전정책과, 체육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만안구도서관, 동안구도서관으로 한다.
3. 도시개혁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단 회의) 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단은 위원회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총괄간사, 위원회간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단 회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요 의제, 긴급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정한다.

④ 위원장단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단 구성원 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단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지원단)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구성한다.

② 실무지원단은 위원회간사, 총괄간사,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지원단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상정된 안건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지원 및 사무 처리는 실무지원단이 총괄한다.

제7조(의안제출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및 자료를 붙여 정기회의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안서와 그 붙임자료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송부하고, 연구활동 등을 지원한다.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총괄간사는 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채택 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간사는 모든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안 처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안의 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시정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하고, “노인  
장애인과, 가족여성과”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환경보전과, 하  
천관리과, 자원순환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환경정책과, 기  
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22. 1. 10. 규칙 제160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를 “고용노동과”로 하고, “만안보건과, 동  
안보건과”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 첨단교통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식품안전과”를 “위생정  
책과”로,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생도서관”을 “평생학습과, 만안구도서관,

동안구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마트시티과”를 “신성장전략과”로, “첨단교통과”를 “스마트도시정보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위 축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 위촉 해제 통보서

소 속:

성 명:

귀하께서는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직에서 위촉 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 의 안 서  |  |
|--|--|
| 제 목  |  |
| 의 안 내 용  |  |
| 관련서류 및 자료  |  |
| <p>「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문, 제안, 건의, 조사, 연구)를 요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000 실·과·관·소장 또는 위원 (서명)</p> <p>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귀하</p> |  |



[별지 제4호서식]

## 회 의 록

- 일 시
- 장 소
- 참석자 : 위원   명 중   명 - 위원참석 현황 별첨
- 심의안건 :       건
  - 안건1
  - 안건2
  - 안건3
- 안건별 심의내용 : 따로 붙임

20 . . .

○○ 분과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 간 사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 주요 의안 관리 대장

| 의안<br>번호 | 제목 | 의안내용 | 처리결과 |    | 주관<br>부서 | 소관<br>위원회 |
|----------|----|------|------|----|----------|-----------|
|          |    |      | 일시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